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10
----------	---------

제출일자 : 2006. 3. 7

발의자 : 박종권, 김석관, 김기석,
최갑현, 최연조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322 : 2006. 1. 1)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006. 1. 31. 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을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및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의정활동비는”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으로 한다.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②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숙박료”를 “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정활동비·여비 지급기준)①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안에서 제2조제2항에 의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 범위안에서 제2조제2항에 의한다.

③국외여비는 별표3의 국외여비지급 범위안에서 제2조제2항에 의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1에 의한 일비” 를 “별표 2에 의한 현지교통비”로 한다.

제9조 “회기수당 및 여비” 를 “월정수당 및 여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6 조 (회기수당 지급기준) 의 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 일수 1일에 100,000원이 내로 한다.</p> <p>제 7 조 (여비 지급기준) ①국내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 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 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 다.</p> <p>제 8 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 서의 출장 및 여행여비) ①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 여비는 별표 1에 의한 일비 식비만을 지급한다.</p> <p>제 9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 급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7조(의정활동비·여비 지급기준)① 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의정활 동비 지급 범위안에서 제2조제 2항에 의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안에서 제2조제2항에 의한다. ③국외여비는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 범위안에서 제2조제2항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조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 ①-----</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여비는 별표 2에 의한 현지교통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조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월정수당 및 여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관련법령발취

◎대통령령 제1932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670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범위 기준(안 제15조제1항제3호)

- (1)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하고, 동 기준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3) 월정수당의 지급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의2 신설)

- (1)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함.
-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
-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 변경 등(안 제15조의3제1호·제2호, 현행 제45조 삭제)

- (1)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
- (2)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방채발행계획 규정을 삭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	별표 1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범위 별 표 2----- 범위
별표 2의 구분에 의장,부의장	별표 2의 구분에 “의장,부의장”을 “의원”으로 “의원”은 <삭제>
별표 3의 비고에 1항 및 2항	별표 3의 비고에 “1항 및 2항”을 <삭제> 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 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에 의거 지급”한다. <신설>

[별표1] <개정 2006.3. >

의정활동비지급범위 (제7조제1항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
의 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1] <신설 2005.2.5 >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 (제2조제2항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 활동비
의 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개정 2006. 3 >

국 내 여 비 지 급 범 위(제7조제2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이나 남해군 등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에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4.2.5>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5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이나 마산시, 진해시등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에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6.3 >

국 외 여 비 지 급 범 위 (제7조제3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 일 미 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 일 이상
의장· 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급구 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급의 철도 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 에 요구하는 실비 액	·2등급이상의 등급구 별이 있는 경우에 는 최상급의 선임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그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40	170	195
					35	166	107			
의 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130	155	180
					35	120	78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35	92	58			
					라등급	라등급	라등급			
					35	79	49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30	155	180
					30	145	81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30	95	59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30	70	44			
					라등급	라등급	라등급			
					30	62	37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지급